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995]
의견서

2021. 7.

[사] 오픈넷



대표자: 황성기

주소: [우]066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9, 402 (서초동, 한림빌딩)

전화번호: 02-581-1643 팩스: 02-581-1642

1. 본 개정안의 요지

- 본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그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매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제안배경을 고려할 때, 현재 포털이 자체적인 뉴스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제공’, ‘배열’, ‘전재(인링크)’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뉴스 콘텐츠는 검색 및 언론사 사이트로의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접할 수 있도록 ‘매개’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해석됨.

2.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및 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임.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제한은 뉴스(표현물)를 제공, 매개, 배열하여 사상을 전파하고자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¹⁾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다양한 뉴스 공급 방식을 선택할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 원칙에 기한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역시 제한하는 규제임. 나아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정당한 권리도 제한됨.
- 헌법상 기본권 및 법익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률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러한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명백하여야 함.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특정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 재배열하여 일방적으로 여론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만 실시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본 개정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방지하고자 하는 해악)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있지 않음.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특정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 배열하여 일방적으로 여론을 주도할

1) “게시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수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와 같은 해약은 막연하게 추측되고 있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현재 이러한 해약이 존재하는지부터, 현재 포털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의 뉴스 배열, 추천, 인링크 전제 방식 등)가 이러한 해약을 불러일으킨다는 개연성, 본 개정안 내용대로 서비스를 제한하여도 이러한 해약이 해소될 것이라는 개연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본 개정안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조차 불분명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각종 기본권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의 소지가 높음.

<끝>